

##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(안)

의안 번호	116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5. 1 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# 1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 개정('09.2.6)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,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%, 토지 및 건축물은 70%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
-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, '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,000분의 1.5에서 1,000분의 1.4로 인하 함

### 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근거 : 지방세법, 고성군세 조례(행정안전부 표준안)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### 3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고성군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 중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,000분의 1.4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기한)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 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1조(서울) 도시계획세의 서울은 1,000분의 1.5로 한다</p>	<p>제91조(서울) 도시계획세의 서울은 1,000분의 1.4로 한다</p>